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5. .

국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2월 22일, 임종득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2월 23일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2026.3.1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6.4.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
영폐기)

제1차 국방위원회(2026.4.14.)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임종득의원)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군수품을 획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그에 따른 미비점에 대한 수정·보완방안이 포함된 품질보증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군수품의 품질 검사 및 단계별 품질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있지 않아, 무기체계 분야를 포함한 정부의 군수품 품질보증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단계별 품질보증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군수품 품질보증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2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문성환)

- 헌법 제40조의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국회입법원칙에 충실하고 품질보증제도의 중요사항인 그 적용기준과 절차를 법률에서 정함으로써 품질보증 정책의 객관성과 법률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또한 개정안에서 직접 규율하는 사항이 매우 전문적·세부적이거나 국방과학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빈번히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동 규정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더라도 법 집행이나 제도 운용에 있어서 특별한 비효율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특히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산업표준 등에 대한 국가공인기관의 품질인증의 존재 여부’ 등 단계별 품질보증의 형태 및 적용기준을 정할 때 고려사항은 품질보증 제도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다만, 개정안의 내용 중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품질보증의 내용·방법·절차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이라기보다는 ‘유해물질의 안전’과 관련한 특수한 성격의 품질보증 등에 관한 절차적인 사항이라는 점에서 동 조항은 현행대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률안심사소위원장 부승찬)

이 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이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